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4.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8. 3. 5.
다. 상정일자 : 2008. 3. 11.(제1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가. 제안사유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안 제2조)
 - ▶ 재원 : 출연금 +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 기금의 존속기한 : 5년(2012년 12월 31일까지)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안 제3조)
 - ▶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
 - ▶ 운용기금은 기금의 종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재적립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
-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법적 검토 】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은 법 적근거가 있다고 할것임.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1월 2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 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 음.

【 행정적 검토 】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금번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우 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소득격차가 점 점 더 심해지고 문화생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과 사회활동참여가 어려워 날로 소외되어 가는 장애우와 장애인단체 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임.

-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기금이 어느 정도이며, 매년 시 출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할것임.
-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바, 현재 장애우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것이며, 기금의 용도가 현재 지원되는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기금이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안 심의시 타시군의 기금운용의 예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함.
- 본 조례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제천시 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구성)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법령과 조례 간 상충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의가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시 출연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강현삼 의원)

-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강현삼 의원)
- 현재 장애인단체 지원사업과 복지기금운영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현삼 의원)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은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복지위원회 구성을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되는 문제하고 그 중에 1/3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가해야 되는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강현삼 의원)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규정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떤 경제적으로 잘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로간에 충족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을 기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관계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강현삼 의원)
- 기금에 대하여는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모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함. 기금 5억에 대하여 이자율을 5% 보았을때 사용할수 있는 기금은 2700만원으로 판단되며, 각 단체에서 이 기금을 사용에 대해서 알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박성하 의원)

나. 답변요지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 시에서 2012년까지 5년 기간으로 해서 매년 1억씩 할려고 하며, 올해는 추경예산에 2억 정도 반영하고 5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있음.
- 장애인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그 운영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4명이며 그중 장애인은 7명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는 해석이 어떤 교수라든지 어떤 진짜 전문적인 분야에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을 따지면 그렇지만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 구성현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충족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음.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알았음.
- 앞서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시 별도로 검토하였으면 함.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사료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자 함.
(양순경 의원)

7. 심사 내용

- 양순경의원의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심사보고 불임서류

1.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5조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 안 제5조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다.”를 신설한다.
- 안 제5조제4항제1호 “1.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한다.
- 안 제5조제4항제2호 “2. 제천시의회 의원”을 신설한다.
- 안 제5조제4항제3호 “3. 제천시 소속 공무원”을 신설한다.
- 안 제5조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이 된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p> <p>②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p> <p>③ (신설)</p> <p>④ (신설)</p> <p>1. (신설)</p> <p>2. (신설)</p> <p>3. (신설)</p> <p>⑤. (신설)</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다.</p> <p>1.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제천시의회 의원</p> <p>3. 제천시 소속 공무원</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이 된다.</p>